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06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조인철・박지원・이개호

문진석 • 안도걸 • 박용갑

위성곤 • 이건태 • 주철현

한정애 • 고민정 • 박민규

노종면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상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EU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내려진 사법 및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조치하였는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

음.

이에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6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의 통보

제44조의7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 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제3항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명령의 이행 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내대리인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					
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방송				
	통신위원회 조치명령의 이행				
	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				
	<u>의 통보</u>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⑤ (생 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u>				
	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 운영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제76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의2. (생 략) <u><신</u> 설>

4의3.·4의4. (생략)

5. ~ 25. (생략)

④ (생 략)

통신위원회에 해당 명령의 이 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석의4. · 4의5. (현행 제4호의3및 제4호의4와 같음)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